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1
----------	-----

발의연월일 : 2024. 6. 17.

발의자 : 문대림 · 복기왕 · 박홍배

김영호 · 위성곤 · 김한규

황운하 · 주철현 · 민홍철

송재봉 · 이원택 · 정준호

임미애 · 서삼석 · 오세희

강선우 · 김성환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임. 특히 농업 생산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농자재 매입비와 전기요금 및 유류비가 급등하며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

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비 급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및 에너지 비용,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의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할 경

우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다음 각 목의 농자재를 말한다.
  -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4.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전기요금 및

유류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 경영위기”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가격과 농업에너지비용 급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①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경영비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이하 “경영위기”라 한다)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상황과 농업에너지비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위기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경영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등

제7조(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유류비 등 농업에너지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증가한 농업에너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에너지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건비 지원
2.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3. 스마트농업 설비투자 자금의 융자·보조
4. 그 밖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활동에 수

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용자·보조

제1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장 별 칙

제13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